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6
----------	------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3항)

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8조)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라. 시간선택임기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완화(별표 5의3)

마. 응시원서상 용어 정비(탈모→모자를 쓰지 않은)(별지 제1·2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의3 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라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한”을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표 한시임기제의 6호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며, 같은 란의 7호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고, 같은 란의 8호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 후”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을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별표 5의3 제3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라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란의 마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표 한시임기제의 9호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 · 7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 ----- 18세 이상이어야 -----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 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이하 “임용점검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

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종류	입용등급	자 격 규 준
시간 관련 비율	가급	1. 학사직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년 또는 6개월간 이상의 공무관리로서 2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직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년 또는 7개월간 이상의 공무관리로서 2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직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년 또는 8개월간 이상의 공무관리로서 2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3급이하로 임명된 후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년 또는 9개월간 이상의 공무관리로서 2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3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입용예정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호	3. 6년 이상 또는 6월 1개월 이상에 상응하는 공무관리로서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입기제	1. 학사직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이하로 임명된 후 1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또는 7월 1개월에 상응하는 공무관리로서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직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월 1개월에 상응하는 공무관리로서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6월 1개월 이상 또는 8월 1개월에 상응하는 공무관리로서 1년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3급이하로 임명된 후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월 1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월 1개월 이상에 상응하는 공무관리로서 6개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3. 6월 1월 이상 입용예정 직무분야에 상응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정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종급	자 격 기 준
시·군·구 교과서 교사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도 교사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4. 과정적 관점에 상응하는 **내용** (포함)의 의의에 시선전환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는 별로 없고, 「매일경제」에 한정하여, 매 다른 단락을 장이나 부나 단락의 배치와도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경향이 일어난다.
5. 정지적 관점에 따르면 정지적 관점은 일어난 일을 정지된 시간과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정지적인 정황만을 뜻하는 반면 매 다른 단락을 정지적 관점의 전두는 두 번째로 일어난 정지적 정황을 정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 「종교개혁」에서는 「고교교육」에, 매 다른 전문내용을 포함한 서문 및 외산 전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문을 말한다.
7. 성립 이유에 따르면 규정한 정지적 내용을 중한 서문은 하위 정지적 관점의 정지적 내용을 중한 것으로 보인다.
8. 다른 틀에서 각주에 의거하여 정지적 서문 해석을 통해 드러난 인식의 전환의 의의는 정지적 내용 중립적이라 한다.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illegible][illegible]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1. 경직적 또는 상근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근무가 공직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공직자”란 공무원,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소의 공직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의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자력으로인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령을 따르되 인사각료(보훈관)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